

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
담당 부서	건축문화경관과	배포일시	2020. 6. 2.(화) / 총 2매	
		담당자	• 과장 김태경, 서기관 조항석, 주무관 손은수 • ☎ (044) 201-3775, 3776, 3777	
보 도 일 시		2020년 6월 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###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에 따라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

- '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.
-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,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,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.
  -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,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.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,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었다.
-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,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'연속 5회'에서 '5년 내 5회'로 변경하여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.
  - 또한, 접수 취소자,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, 편의를 최대화하였다.
-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.
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,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,
- “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적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조항석서기관(☎ 044-201-37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